



## 구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原子力船(원자력선)의 國內入港(국내입항) 시도의 전말



함철훈

전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숭실대 대학원 석사
- 충남대 대학원 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 KAIST 대우교수
-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
- 한양대 공학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역임

### 1. 구 소련의 붕괴

구소련의 붕괴는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142-H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소련 내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독립국가연합(CIS) 수립을 허용하는 안이었다.

그 전일인 1991년 12월 25일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자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소련지도부를 해체했으며 모든 권한을 보리스 옐친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1991년 8월부터 12월 사이 러시아를 포함한 소련의 모든 공화국들이 연방에서 탈퇴하거나 소련의 수립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일주일 전 소련의 11개 공화국은 소련 해체에 합의하고 CIS 수립을 선언한 「알마아타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소련의 붕괴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신생 독립국들이 수립되었다.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였다. 양자의 기본적인 이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된 것이다.

첫째,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둘째, 이러한 물자와 수량을 생산하는 방식의 문제

셋째, 생산된 물자와 수량을 분배하는 문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한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위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 비해, 공산주의는 국가의 통제와 계획에 의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결국 체제경쟁에서 평등을 내건 공산주의의 원조 소련은 그 해체를 통해 산산이 조각났고, 자유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경제체제는 한동안 혼란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배급에 의존하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 별의별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러시아 선적의 원자력선 국내입항에 따른 특수한 문제가 발생되어 그 진행경과를 소개한다.

## 2. 러시아 원자력선의 국내입항 시도

러시아 선적의 「MURMANSK SHIPPING COMPANY」의 원자력선 「MV SEVMORPUT」호가 동(구리)광석 12,000톤을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온산 비철금속단지>로 운송하기 위해 해운항만청에 입항허가를 신청했다. 입항기

간은 1994년 9월 6일부터 1994년 9월 13일까지 8일간이었다.

해운항만청이 러시아 선적의 「MV SEVMORPUT」호의 입항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자력의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처 원자력국과도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입법부재현상>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MV SEVMORPUT」호가 입항하려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법부재현상은 딱히 정부(과학기술처)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원자력선이 국내에 입항할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과학기술처가 「MV SEVMORPUT」호의 입항을 허가하려면 국내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려야 함에 반해, 러시아의 「MV SEVMORPUT」호는 보름 후면 입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두고 그야말로 당시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서는 노심초사를 하였다.

원자력선 MV SEVMORPUT호의 제원	
1. 제원	
* 선 적 :	러시아
* 소유주 :	MURMANSK SHIPPING COMPANY
* 건 조 :	1988년
* 적재량 :	38,226GRT
* 길 이 :	260m, 선평 : 32m, 높이 : 12m
* 열출력 :	운항 시 135MW(정박 시 22MW)
2. 입항목적 :	동광석(COPPER CATHODE) 12,000톤을 비철금속단지인 경남 온산항에 하역
3. 입항기간 :	1994. 9. 6. ~ 1994. 9. 13. (8일간)

1994년 당시 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나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그래서인지 원자력국에서 자문요청이 왔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뭐냐는 것이다.

나도 워낙 황당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원자력국에서는 어쨌든 당신이 이 문제를 연구한 국내 유일무이한 전문가이니 해결방안을 이틀 이내에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을 받은 후 이틀 동안 밤잠

이 안 왔다. 당시 내가 경험한 중압감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를 알만한 사람도 없고 정말 천지가 캄캄한 느낌이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나 이외에는 결정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명감 내지 책임감이 밀려왔다.

### 3. 대안의 제시

결국 나는 고민 끝에 정부(과학기술처)에 당시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원자력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 <60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조건으로 입항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국내법의 관련 규정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내법은 일본법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 이하 원배법>과 자매법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 법에서는 모든 원자력 활동을 하기 전 원자력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전 원자력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었다. 이른바 이를 두고 <손해배상조치>라 한다. 당시 원배법상 원자력사업자에 관한 손해배상조치는 다음과 같았으나, 이때 우리나라의 원배법에는 원자력선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 손해배상조치의무자 : 원자로 및 관계시

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원배법 제2조 제3항 제1호)

- 손해배상조치금액 :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60억 원(원배법 제6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조)
- 손해배상조치의 내용 : 보험계약 + 보상계약 또는 공탁

## (2)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원자력선에 대한 손해배상조치

- ① 일본의 원자력선이 일본의 영해 내에 있거나, 외국의 수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공해를 향해 중이거나 또는 외국의 수역에 들어간 경우 제3국에 대한 배상조치
  - 원자력사업자는 무한책임 부담
  - 1 원자력선 당 300억 엔의 배상조치
  - 배상조치의 내용 : 보험계약 + 보상계약 또는 공탁
  - 법적 근거 : 일본 원배법 제7조 제1항
- ② 일본의 원자력선이 외국의 수역에 들어갈 경우의 배상조치
  - 유한책임 : 일본정부가 외국정부와 합의한 금액
  - 원자력손해배상에 족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청장관의 승인
  - 배상조치의 내용 : 보험계약 + 보상계약 또는 기타 조치
  - 법적 근거 : 일본 원배법 제7조의 2 제1항
- ③ 외국의 원자력선이 일본의 수역으로 들어

올 경우의 배상조치

- 유한책임 : 일본정부가 당해 외국정부와 합의한 금액
  - 원자력손해배상에 족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청장관의 승인
  - 배상조치의 내용 : 보험계약 또는 기타조치
  - 근거 : 원배법 제7조의 2 제2항
-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함철훈, 원자력손해배상법, 진원사, 2013년>을 참조할 것.)

## (3) 소결

당시 일본의 원배법상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손해배상조치금액은 300억 엔이었고, 위 ①의 경우 원자력선에 대한 배상조치액은 300억 엔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례를 참조하였다.

즉 당시 국내 원배법상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손해배상조치액은 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원자력선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도 일본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러시아 원자력선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는 60억 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하였다.

개정된 현행 원배법에서는 원자력선에 대하여 손해배상조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러시아의 원자력선이 입항하고자 했던 1984년 당시의 우리나라 원배법에는 원자력선에 대한 관련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과학기술처의 내부방침으로 시행을 한 후 곧바로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도 건의하였다.

#### 4.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실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러시아 선적 「MV SEVMORPUT」호의 소속회사인 「MURMANSK SHIPPING COMPANY」가 60억 원(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동광석 12,000톤을 해상에 버린 일반화물선으로 환적해 버린 것이다. 결국 동광석 12,000톤은 일반화물선에 실려 온산항으로 입항하게 된 것이었다.

옛 소련의 해체 당시 상용 원자력선의 대부분은 소련이 보유,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용도는 주로 동절기에 결빙된 북해를 운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라가 망조가 들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해를 오가야 할 러시아의 원자력

선이 우리나라 온산항까지 오려 하였으니 생각해 보면 당시 러시아의 사정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러나 당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내가 겪은 절박했던 경험은 그 후 나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했으며 이를 계기로 나는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즉, 〈전문가라 함은 미지의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내 나름대로 정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일본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진화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끔 생각해 본다. **KIIF**